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9. 11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전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환 구

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된 사항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민원해소와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을 위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함(안 제23조).

나. 환경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완화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44조).

다. 취약지구의 지정목적과 상충되는 지역·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폐지함(안 제59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23조에서는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44조에서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시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외시켰으며,
- 안 제59조에서는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,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높이 및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 낮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목적과 상충되어 제외시켰으며,
- 안 제61조와 안 제62조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였음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안 제61조와 안 제62조의 경우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없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